

##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3, Vol. 24, No. 4, 31-54  
<https://doi.org/10.15703/kjc.24.4.202308.31>

#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 탐색\*

HAN XINHUI<sup>1</sup> · 김예담<sup>1</sup> · 이상민<sup>2†</sup>

<sup>1</sup>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수료, <sup>2</sup>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그 후 상담 외의 타 업종에서의 사업장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규준을 유형화하여 국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에서 발의된 상담 법안은 크게 상담센터 개소에 대한 최소 결격 사유와 상담사 자격증 획득에서의 결격 사유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타 업종의 센터 개소 결격 사유 유형은 크게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 규준에 주는 함의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상담센터, 상담소 개업, 상담사법, 최소 결격 사유, 규준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상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306 / E-mail: leesang@korea.ac.kr

## 서 론

현재 국내에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협행법상 사설 상담센터의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며, 따라서 누구나 원한다면 기관을 개소할 수 있다(성현모, 이상민, 2021). 이에 따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범죄자가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실제로 10명 이상의 내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 이력이 있는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별도의 규제 없이 상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매체를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인훈, 2016). 상담의 특성상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긴밀한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등 상담자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박성희, 2000), 협행법상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및 운영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내담자들의 권리 인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다. 문유정과 조항(2021)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판례들을 분석하였는데, 그중 내담자가 직접 상담자를 고소한 경우는 상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3건 및 상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건 1건에 불과했다. 이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소송 제기를 통해 국민으로서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법적 권리만 주장하였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로서 갖는 특수한 권리, 즉 한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 제3장에 의하여 규정된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자신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권리’, ‘상담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울 시 상담을 즉시 종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다른 대안을 제시받을 권리’ 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 상담센터의 개업자 또는 대표가 상담 관련 전공자가 아니고 상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상담 관련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업의 자격 요건의 부재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예컨대, 상담센터의 대표가 상담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의 재정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대표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적 자원의 활용, 서비스의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내담자, 즉 상담 서비스의 소비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강혜영, 2011; 김재훈 외, 2020; 이은정 외, 2019). 실제로 사설 상담센터에서 대표나 운영자로부터 내담자에게 검사를 권하라는 요청을 받는 등 수의을 우선시하는 경영방식을 접한 상담자들이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훈 외, 2020). 이처럼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부재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부재는 본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상담 전문가에 대한 자격법이 미비한 실정과 관련된다. 미국, 대만,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설 상담소의 개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김수임 외, 2021; 나고은 외, 2021; 성현모 외, 2022). 최근 국내에서도 이처럼 상담 기관의 개업 자격을 포함하는 상담사 자격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며(김인규, 2022; 김인규, 김승완, 2021; 성현모, 이상민, 2021),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과정을 고려할 때,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법률제정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여가 필수적이나, 현재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이해당사자 집단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성현모, 이상민, 2022).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시행령이 규정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수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 중에 언제든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한국상담학회, 2022), 상담 전문가에 대한 자격법 제정은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사료된다. 하지만, 현재 상담 관련 법제화에 대한 각 이해집단의 관심 정도가 높고, 법제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향후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갈등이 조정되어 각 이해집단의 정체성 및 이익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담 관련 법제화를 위한 각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및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단기적으로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성현모 외, 2022).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상담 법제화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상담의 전문직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및 과정에 관한 연구(김인규, 2021; 김인규, 2022; 서영석, 안하얀, 2022),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함으로 국내 법제화 과정에 대해 제언을 하는 연구(김수임 외, 2021; 나고온 외, 2021; 성현모 외, 2022; 하규영 외, 2020), 학교상담 법제

화에 관한 연구(이동갑, 2014; 제수영, 조항, 2020; 하규영 외 2020; 황준성 외, 2011), 발의된 법안 비교 연구(성현모, 이상민, 2022),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안성희 외, 2022b), 최소 응시자격에 관한 연구(안성희 외, 2022c), 자격증 형태에 관한 연구(안성희 외, 2022a)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담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가 모법 제정의 방향성,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은 모법의 부재 때문에 ‘상담’이라는 전반적인 체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상담 관련 모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과정은 아직 시작 단계이고, 법제화가 이루어질 시 상담 관련 전문가의 자격 및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사설 상담센터 개설의 자격 및 결격 사유는 모두 모법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상담자의 전문성과 내담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므로 국내의 상담 법제화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목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상담 관련 법제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기에, 본 연구는 상담 관련 모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기존 법률의 일부 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예: 신창현 의원 발의안)으로 사설 상담 기관 개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격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을 고려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기존에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최소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결격 사유를 직접 제시한 법안과 더불어, 상담센터 개설의 자격을 포함하는 상담 전문가 자

격 법안에서 제시하는 자격증 관련 결격 사유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상담 이외 타 업종에서의 사업장 개설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 제시 방식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후, 상담센터에 적용 가능한 규준과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 기존 상담 관련 발의 법안에 제시된 결격 사유 요건 분석

2019년 신창현 의원 발의안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 이후 상담소 개업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은 별도로 발의되지 않았으나, 2022년 상담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상담사의 자격에 관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2022년 3월과 4월, 7월에 걸쳐 ‘심리상담사법안(의안번호 2114984, 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039, 전봉민 의원 발의, 이하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2115453, 서정숙 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의안 번호 2116456, 심상정 의원 발의)’ 등 총 네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내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들을 살펴볼 때, 모두 상담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내담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들이 취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기존 법률인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형태로 상담소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려 시도하였다. 반면, 최종윤, 전봉민, 서정숙,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모법의 형태로 상담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개업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였다.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의 규준을 탐색

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나와 있는 상담소 개설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

우선, 현재 국내에는 상담소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개설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일반 업소와 동일하게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의 개업을 막기 어려운 설정이다. 2019년 신창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상담소의 개업 기준은 일반 업종과 다루게 다루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존의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 법령을 개정하여, 상담소 개소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창현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제3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으로 개정하고, 제31조의 2부터 제31조의 5까지 신설한다고 제안하였다. 제31조의 2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 심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를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상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상담 관련 사무소의 개설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나아가, 상담 관련 사무소 개설에 있어서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다(Table 1 참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미성

**Table 1**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the existing legislation*

법안명	결격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신창현 의원)	<p>제31조의2(심리상담소의 개설 · 운영 등)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소를 개설 ·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li> <li>「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li> <li>「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민법 제9조).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민법 제12조).

\*\*\* 치료감호: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인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한국법제연구원)

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였다. 신창현 의원의 발의안은 상담소 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및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으나, 상담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담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결격 사유가 없고,

상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받으면 누구나 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 내 상담소 개설 결격 사유 관련 규정

신창현 의원 발의안인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법률의 일부 법령을 개정하여 상담소 개설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담자의 권익을 보장하

## 상담학연구

려고 했다면, 2022년 발의된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모법 제정을 통해 상담 관련 전문

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상담사무 소 개소에 대해 규정하여, 내담자 및 상담 전문가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성현모,

**Table 2**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o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법안명	결격 사유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제6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되지 못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가석방의 경우도 포함)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제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5.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제7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심리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4.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난지 아니한 사람

이상민, 2022).

우선 ‘마음건강증진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모두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들에서 제시한 상담사 자격의 결격 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했던 상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결격 사유와 유사하나 세부적인 조항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컨대 Table 2를 보면 전봉민 의원의 마음건강증진법안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과는 달리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 항목에서 제외시킨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자 또는 아동·청

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 혹은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자로 보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한 기간인 5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의 경우도 유사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결격자로 포함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법안의 경우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심리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며(성현모, 이상민, 2022),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적합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은 최종윤 의원의

**Table 3**

*Regulations on counselor's role and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법안명	상담 업무 독점권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심리상담사가 아닌 자는 심리상담사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심리 상담 및 이에 관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제4조(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사항) 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제4조(심리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1 심리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제29조(상담행위의 제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상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상담소의 개설) 1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상담사가 상담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 3**

*Regulations on counselor's role and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s described in existing legislation  
(continued)*

법안명	개업 주체에 대한 규정
마음건강증진법안 (전봉민 의원)	<p>제13조(사무소 설치 등)</p> <p>① 심리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심리상담사 업무 공간 부족 등 심리상담사협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심리상담사가 주재(駐在)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심리상담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리상담사협회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심리상담사법안 (최종윤 의원)	<p>제20조(사무소 설치 등)</p> <p>① 심리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심리상담사가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사무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p>제10조(심리서비스 법인의 설립 등) (중략)</p> <p>③ 심리사가 심리서비스업을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p>제15조(상담소의 개설)</p> <p>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상담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다.</p> <p>② 상담사가 상담소를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개설등록을 한 상담사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심리상담사법안과 매우 유사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담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사설 상담센터를 개설하기 위한 규정을 살펴볼 때, 전봉민, 최종윤, 서정숙,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였다(Table 3 참조).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증진법안’ 제4조, ‘심리상담사법안’ 제4조, ‘심리사법안’ 제4조, ‘상담사법안’ 제29조는 상담 전문가만이 상담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상담 전문가가 상담 관련 사설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단순 등록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담 관련 시설을 개업할 수 있는 주체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음건강증진법안’ 제13조, ‘심리상담사법안’ 제20조, ‘심리사법안’ 제10조, ‘상담사법안’ 제15조에서는 상담 사무소를 설치, 이전, 폐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 관련 전문가이고,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담 업무를 하거나, 상

담자를 고용하여 상담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였기에,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는 자격증 취득 결격 사유에 포함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국내 타 업종에서의 개업 자격 및 결격 사유 요건 분석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한 결격 사유를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하여 실행되지 않는 한 바로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국내 타 업종 결격 사유를 비교하고 분류하여,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법적 결격 사유를 정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할 국내 타업종을 선정함에 있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임원위원회를 설립을 개업의 조건으로 하는 법인과 같은 단체(예: 공공 및 국가 소속 단체 개소)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는 본 연구가 타 업종의 공공 및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들과 비교하여 개업 시 결격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 업종 개업의 결격 사유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이 개업하는 사설 기관에 관련된 법 규정에 한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업자를 민간 사업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종사자는 기관 및 사업장의 설립 목적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법적 요건, 결격 사유가 규정된 형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을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으로 명명하였다.

####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에서의 결격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격 소지자만이 개업할 수 있고, 자격증 미소지자가 해당 민간 사업장을 설립하고 개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으로 명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의료법, 변호사법은 의료기관,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업종을 예시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Table 4를 보면, 의료법 제8조에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의료기관의 개업과 설립의 독점권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였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이외에도 국가, 법인 등이 개설할 수는 있으나, 본 연구는 사설 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 및 결격 사유에 초점을 맞췄기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파면되거나 제명된 자,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처벌로 정직 기간에 있는 자, 피성년후견인, 과산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법률사무소 개설의 주체는 변호사이고, 사무소 개업을 위해서는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완성해야 개업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즉, 의료법과 변호사법은 의료인과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결격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과 법률사무소 개업의 권한

## 상담학연구

**Table 4**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btaining certifications and opening medical centers and law firms for of employers and employees*

개업자 및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서의 결격 사유	
의료인	<p>의료법 제8조(결격 사유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li> <li>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li> <li>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li> </ol>
변호사	<p>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li> <li>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li> </ol>
개업의 자격조건	
의료기관	<p>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후략)**</li> </ol>
법률사무소	<p>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p> <p>③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 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p> <p>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 복권: 파산법에서의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박탈된 공·사권의 제한을 풀고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

\*\* 국가나 지방단체, 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는 사설 기관의 결격 사유를 탐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생략함.

을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부여하여, 누구나 해당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 개업자 제한형

두 번째 유형은 민간 사업장을 소유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법적 인 요구가 없으나, 민간 사업장 개소에 대한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된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 혼중개업법)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업자 제한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5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 개업법의 첫 번째 공통점은 개업자의 자격에 대 한 법적 요구가 따로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 통점은 개업자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에서는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모자보건법을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산후조리원 을 설치, 운영, 및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학원법 제9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은 자, 교습정치처분을 받은 후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학원 설립, 운영, 및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미성년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결혼 중개를 업으로 삼는 것으로 금지하였다. 하여, 개업자 제한형과 자격증 소지자 독점 형은 모두 법으로 개업자의 결격 사유가 규정되었으나, 결격 사유를 자격증 취득에 포함했는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법은 개업에 있어서 개업자의 결격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업자의 자격 요건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해당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및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종사자를 고용한다면 누구나 개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6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산후조리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자격 및 결격 사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산후조리업 운영 및 신고를 위한 개업자에 대한 자격증은 따로 없으나, 개업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법 제6조에서는 학원을 설립 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육과정, 시설, 강사명단 등을 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 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 전문대 및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강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학원설립을 위한 자격증에 대한 법적인 요구는 없고, 과외 교습의 목적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강사 교육수준, 교습경력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본

## 상담학연구

**Table 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obtaining certifications of owners and opening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개업에 대한 규정	
산후조리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립 학원	학원법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서비스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혼증개업	결혼증개업법 제4조(국제결혼증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증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증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증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업자 결격 사유	
산후조리기관	<p>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미만인 자, 괴성년후견인 또는 괴한정후견인</li> <li>「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li> <li>「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li> </ol>
사립 학원	<p>학원법 제9조(결격 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괴성년후견인 · 괴한정후견인</li> <li>2.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별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li> <li>6.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li> <li>6의 2.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li> <li>7. 법인으로서 그 입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li> </ol>
결혼증개업	<p>제6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증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 괴성년후견인 · 괴한정후견인 또는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종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별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5. 국제결혼·증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Tab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s for employees in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종사자 자격
	간호사	<p>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 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li> <li>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p>
	산후조리기관	
	산후조리사	<p>모자보건법 제15조의 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p>
	학원법 제13조(강사 등)	<p>학원법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p>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li> <li>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専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li> <li>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li> <li>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li> </ol>
결혼증개업법	종사자	없음

**Tab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s for employees in postpartum care centers, private institutes, and marriage agency  
(continued)*

종사자 결격 사유		
간호사	Table 3의 의료인 결격 사유와 동일	
산후조리기관 산후도우미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li> <li>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7.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9.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별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p>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학원법	강사	없음
결혼중개업법	종사자	없음

금 및 보증보험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은 결혼중개업 개업을 하기 위한 인력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결혼중개업에서는 결혼중개업에 관련된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

문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한다. 세 가지 법률의 규정은 모두 개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따로 없고,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그 업격함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인 요구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를 탐색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지만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업자 제한형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허들 프리형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처럼 개업에 있어 개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허들 프리(hurdle free)형’으로 명명하였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개업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개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법정의무를 갖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4항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Table 7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제1항, 제3조는, 숙박업, 목욕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업소와 시설은 각 기능에 따라 신고 및 허가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목욕장을 개업하기 위해, 시설 및 위생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있으나, 개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업자의 자격과 결격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과 개업자 제한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내 타 업종에서의 개업 자격 및 결격 사유 요건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의료법과 변호사법과 같이 해당 전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전문기관을 개인적으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업의 결격 사유를 전문가 자격증 취득 과정에 포함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이 첫 번째 유형이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 중개업법에서와 같이 개업자 제한형은 종사자의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고

Table 7

*Registration of General Restaurants,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Bathhouses*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④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숙박업소와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Table 8***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in other laws*

자격 및 결격 사유 제시 유형	특징	예시
1)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자격증 소지자만이 개업할 수 있고, 결격 사유는 자격증 취득의 결격 사유로 규정됨	의료법, 변호사법
	종사자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의 결격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2) 개업자 제한형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법적인 자격 요건이 없으나, 결격 사유는 법적으로 규정	모자보건법, 학원법,
	종사자 업종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개업 순으로 제한 정도가 낮아짐.	결혼중개업법
3) 허들 프리형	개업자 없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종사자 없음	

용하고 법으로 규정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는 개업자 제한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의 규정과 같이 개업자 및 종사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허들 프리형이 있다. 세 유형을 비교해 보면, 사설 기관 및 업소를 개업함에 있어 법적 규제는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개업자 제한형, 허들 프리형 순으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사 자격에 관련된 법률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설 상담 기관 개업의 최소 결격 사유를 규정 및 적절한 기준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법안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국내 타 업종에서 적용되는 개업의 자격 및 결격 사유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결격 사유를 개업자의 자격 및 면허증 취득과 발급과정에 포함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해당 전문기관을 개업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 법적으로 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개업자 제한형’, 개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 및 결격 사유가 모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허들 프리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사설 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최소 결격 사유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들에서 규정된 개업 관련 결격 사유를 타 업종이 결격 사유를 규정한 방식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사설 상담센터 개업에 대한 결격 사유를 제안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상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면허에 대한 법적인 요구는 따로 없고, 결격 사유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태로 모자보건법, 학원법, 결혼중개업법과 같은 ‘개업자 제한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느슨한 기준으로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이다. 반면, ‘심리상담지원법안’,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사법안’, ‘상담사법안’은 상담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법의 제정을 목적으로, 상담 업무를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자격증 소지자가 상담 관련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임을 규정하고, 개업의 결격 사유를 자격증 취득 결격 사유에 포함함으로 의료법과 변호사법과 같은 형태인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에 속한다. 이는 상담을 업으로 하는 것과, 상담 관련 기관의 개설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엄격한 제한으로서, 업무 및 기관 개설에 대한 독점권을 법으로 규정함으로 상담의 전문성 및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규정한 형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절차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별도의 법적 결격 사유가 부재한 허를 끄리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설 상담센터 개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고, 상담이라는 업종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국내 상담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집단(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과 이해관계자 집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의 갈등(김인규, 2018; 서영석, 안하얀, 2022; 성현모 외, 2022)으로 인해 바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을 적용하여 민간 상담센터 개업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담 관련 법제화의

최종 목표와 방향은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을 적용하여, 상담 전문가 및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 한시적으로나마 ‘개업자 제한형’을 적용하여 사설 상담기관 및 시설의 개업 및 운영에서 최소한의 법적 결격 사유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내담자와 잠재적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설 상담센터 개업 및 운영에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업에 대한 최소 결격 사유의 내용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 그 범위에 관한 합의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창현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최종윤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로 제시한 한편 서정숙 의원의 심리사법안과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법안에서는 전문의가 적합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고, 전봉민 의원의 마음건강증진법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결격 사유 조항 자체에서 제외한 점에서 상이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특정 자격이나 사무에서 배제하는 결격 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두됨에 따라(예: 박인환, 이용표, 2018), 해당 요건에 대한 재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파산 선고받은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격증 소지자 독점형과 개업자 제한형에 속하는 기관의 결격 사유에 대한 법 조항을 비교해 본 결과, 모자보건법을 제외한 변호사법, 학원법,

결혼중개업법에서는 모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자격증에는 파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법, 학원법, 결혼중개업법 등은 민법 제127조에 따라, 파산은 대리권이 소멸 사유 중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리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이상의 세 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해당 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법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과 공무원법과 같이 교원의 사회적 책임 및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교원으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 파산선고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학생들의 정서에 미칠 영향, 통신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였다. 상담은 대리 업무가 아니기에 변호사법, 결혼중개업법이 파산 선고받은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한 이유를 적용할 수 없으나, 학원법이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 어디에서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파산관재인에 속하게 되고(제384조), 일정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319조),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다(제484조).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규정된 파선선고의 효과 및 파산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제한은 사설 상담센터장의 재산이 관재인에 의해 관리되고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모든 재산에 대한 공개이기도 하기에 내담자가 센터에 상담 관련 비용을 제출한 내역 또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열람 및 관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내담자들은 자신

이 상담을 받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밀보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파산으로 인한 재산관리는 내담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설 상담센터장이 상담자를 겸임할 경우, 상담자가 일정한 상황에서 법원의 구인으로 인해 상담을 미루거나, 내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신 비밀 제한은 내담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파산선고받은 상담자는 자신의 우편 등 통신에 관련된 부분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의 비밀보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내담자의 주변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이로부터 사설 상담센터장 혹은 센터장을 겸임한 상담자의 파산은,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는 신뢰와 안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생각해 봄야 한다. 나아가, 상담자들이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을 질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예: 김재훈 외, 2020)에 의하면, 상담자들이 상담센터 운영자의 운영방식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운영자 또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운영자가 내담자의 성향에 대한 고려와 상담자 전문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회기 연장과 심리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훈 외, 2020). 채무자회생법이 파산 선고받은 자에 대한 제한이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적 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운영자들이 있을 가능성, 운영자가 자신의 경제적 요구를 내담자 권리 침해를 통해 충족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를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 결격 사유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제시하는 형식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법안의 내용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 법에서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국가 및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나아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영업의 신고 및 허가에 있어서 해당 법률에 포함되는 광범위한 기관 및 업소들의 규정은 상이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국립 상담 기관의 개업 및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분석에 포함하여, 국립기관 및 사설 기관의 개업 결격 사유를 소유자의 형태 및 기관 규모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여, 상담 전문기관의 개업에 관련된 법률제정의 시사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설 상담센터의 개업과 운영에서의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한 분석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즉, 결격 사유에 포함할 법 조항의 내용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기존에 발의된 상담 관련 법안들의 법 조항을 비교하고,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더욱 정교하게 수정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설 상담 기관 개업 결격 사유를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담자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담 법제화를 목표로 각 단체와 집단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법제화 과정을 보면, 모법 형태의 상담 법령의 제정을 위해 각 이해당사자 집단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집단 간의 갈등을 보면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 서로의 차이를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성현모, 이상민, 2022). 상담 관련 법제화의 과정은 이와 같이 각 전문가들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내담자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을 통해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의 현실적인 복지와 권익을 더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의 제8조 제1항은 ‘상담자의 최우선적 책임은 내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제3장에서도 ‘상담심리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사설 상담센터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개설이 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내담자가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국내의 각 전문가 단체의 상담 분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사설 상담센터 개업을 위한 자격 및 결격 사유를 모법의 형태로 규정함으로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는 내담자가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가지는 특수한 권리까지 보호하려는 것이기에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국내의 상담 법제화가 추구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여야 한다. 다만, 모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의 과정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모법의 제정 과정(상임위원회 심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 등)과 법안 통과 공포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상담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는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통해 사설 상담센터 개업의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 내담자의 최소한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는

시도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혜영 (2011). 상담에서의 마케팅 연구 동향과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2(3), 99-124.
- [Kang, H. Y. (2011). Research trend and task on marketing of counseling servic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3), 199-124.]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Kim, S. I., Choi, N. Y., & Cheong, M. J. (2021). Proposal for the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 reviewing examples of Japanese and the U.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5), 11-21.]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Kim, I. K. (2018).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s of counseling certificat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3), 475-493.]
- 김인규 (2022).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1-18.
- [Kim, I. K. (2022). A study on counseling legislation proc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3), 1-18.]
- 김인규, 김승완 (2021). NCS 기반 상담 자격 법제화 연구-FGI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9(2), 37-58.
- [Kim, I. K., & Kim, S. W. (2021). A study on NCS-based counselor qualification legalization; Using FGI method.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2), 37-58.]
- 김재훈, 서영석, 석범진, 조부휘 (2020). 프랜차이즈 상담센터에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역할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297-1323.
- [Kim, J. H., Seo, Y. S., Seok, B. J., & Cho, B. H. (2020). Role conflicts experienced at by counselors at franchise counseling cente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3), 1297-1323.]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Na, G. E., Heo, N. S., & Lee, S. M. (2021).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egalization of counseling: Focus on licensing rules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ing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in the U.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6), 1-15.]
- 문유정, 조항 (2021).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상담실무에서의 법적 쟁점. *질적탐구*, 7, 639-669.
- [Moon, Y. J., & Jo, H. (2021). Case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in counseling practice.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7, 639-669.]
- 박성희 (2000). 상담 효과를 가져오는 상담 관계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4(1), 167-180.
- [Park, S. H. (200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relationship which brings counseling effec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4(1), 167-180.]
- 박인환, 이용표 (2018).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법과 정책연구*, 18(2), 111-152.
- [Park, I. H., & Lee, Y. P. (2018). The inclusion of

-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aw system for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8(2), 111-152.]
- 서영석, 안하얀 (2022). 상담의 전문직화: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1-15.
- [Seo, Y. S., & An, H. Y. (2022). Professionalization of counseling: The importance of unified efforts within the counseling community for legaliz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1), 1-15.]
- 성현모, 안성희, 김보람, 이상민 (2022). 심리상담 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혼란을 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상담학연구*, 23(4), 13-29.
- [Seong, H. M., An, S. H., Kim, B. R., & Lee, S. M. (2022).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counseling-related bills: Exploring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professionalism while minimizing confusion in the current counseling marke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4), 13-29.]
- 성현모, 이상민 (2021).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담학연구*, 22(4), 1-10.
- [Seong, H. M., & Lee, S. M. (2021).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invigorating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4), 1-10.]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a).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21-36.
- [An, S. H., Seong, H. M., Kim, B. R., & Lee, S. M. (2022a). Exclusive right to practice vs. recognition of competence: Which type of certificate is needed to prevent confusion in rrivate counseling market?
-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5), 21-36.]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b).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 배양의 방향성. *상담학연구*, 23(3), 39-49.
- [An, S. H., Seong, H. M., Kim, B. R., & Lee, S. M. (2022b). Practicum, supervised training, supervised education, professional experience: Direction for improving counseling competencies of psychological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3), 39-49.]
- 안성희, 성현모, 이상민 (2022c).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1-12.
- [An, S. H., Seong, H. M., & Lee, S. M. (2022c). Controversy over minimum qualification: How counseling professionals should be selected and trained?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3(4), 1-12.]
- 이은정, 이은지, 안수정, 서영석 (2019). 기업상담자가 경험한 비밀보장 문제: 윤리적 갈등과 의사결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01-643.
- [Lee, E. J., Lee, E. J., An, S. J., & Seo, Y. S. (2019). Confidentiality issues encountered by workplace counselors: Ethical conflicts and decision-mak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2), 601-643.]
- 인 훈 (2016). 한국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국회포럼 토론회 자료집*, 45-48.
- [In, H. (2016). Status of Korean Counselors' Sex Ethics Consciousness and Reality of Clients' Legal Protection' proceedings. National Assembly Forum Debate, 45-48.]
- 제영수, 조 항 (2020).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

## 상담학연구

---

- 법제도 관련 요구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1(1), 49-67.
- [Je, Y. S., & Jo, H. (2020). A qualitative study on the needs of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s about school counseling law syst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1), 49-67.
- 한국상담학회 (2022. 06. 08.). 심리상담사법 입법 까지의 과정. <https://counselors.or.kr/> 2023. 04. 29. 검색.
-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2022. 06. 08.). Legislation Process of Counselor Law, <https://counselors.or.kr/> searched in 2023. 04. 29.]
- 황준성,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 (2011). 학교상담 법제화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 [Hwang, J. S., Kim, S. K., Lee, D. N., & An, B. C. (2011). Need analysis for the legalization of school counsel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1), 347-374.]

원고 접수일 : 2023. 02. 17.  
수정원고 접수일 : 2023. 08. 14.  
제재 결정일 : 2023. 08. 28.

## Exploring Minimum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HAN XINHUI<sup>1</sup> · Yedam Kim<sup>1</sup> · Sangmin Lee<sup>2</sup>

<sup>1</sup>Master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minimum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required to open a private counseling center. T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counsel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n, we attempted to categorize qualifications and criteria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business in other industries other than counseling and to propose minimum standard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private counseling center.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unseling legislation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minimum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counseling center and the disqualification for acquiring a counselor's license.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types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a cent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exclusive type for license holders', 'restricted type for practitioners', and 'hurdle-free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inimum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opening a counseling center in Ko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center, counseling center opening, counselor's law, minimum disqualification condition, criteria*

## Appendix

**Table 8**  
*The 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in Other Law*

The type of Qualification and disqualification for opening business		Characteristic	Example
1) The exclusive type for license holders	Owners	Only certificate holders can open a business, and disqualification is defined a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from obtaining a certificate.	Medical Service Act, Lawyers Act.
	Employees	The disqualification reasons in obtaining a certification are defined by law.	
2) The restricted type for practitioners	Owners	No legal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business owners' qualifications and licenses, but disqualification reasons are legally specified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rivate Education Act, Marriage Brokerage Industry Act
	Employees	The regulations regarding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 criteria for employees vary depending on the industry. In decreasing order of stringency, the Hat Health Act, the Private Education Act, and the Marriage Brokerage Industry Act have lower levels of strictness.	
3) The hurdle-free type	Owners	None.	Food Sanitation Act, Public Health Control Act
	Employees	None.	